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등의 조치 강구 사항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가〉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50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 등의 조치 강구 사항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가	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4일 이병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 등의 조치 강구 사항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등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책무 중 하나로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u>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5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¹⁾.
-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증축과 같은 개발행위 및 해양생물 포획행위 등이 금지됨.

[표] 해양보호구역 지정 효과

(참고: 해양수산부 제공)

제한행위	행위제한의 예외(적용배제)
- 해양보호생물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는 행위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 - 공유수면의 구조나 수위·수량 변경 - 바다모래, 규사, 토석 채취행위 등	-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 유지·향상 행위 -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 행위 - 학술적 조사·연구목적 행위 - 농업생산기반사업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 등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1.~7. (생략)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치를 강구해야 할 사항에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할 필요성과 국제협약²⁾의 이행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있음.

또한, 이는 최근 국제연합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³⁾에서 2030년까지 육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의 실천목표를 채택했다는 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개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현재 시·도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개소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도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책무사항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경관보호구역)은 36개소, 시·도해양보호구역은 1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음.⁴⁾

2)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 협약 등

3) ◇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육지·해안·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2030년까지 훼손된 육지·해안·해양의 최소 30% 복원○ 생물다양성기금에 민관이 연 2,000억 달러 조달○ 선진국, 2025년까지 연 200억 달러,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출자○ 민간기업의 생물다양성 영향 분석 및 보고 의무화○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보조금 매년 5,000억 달러 이상 삭감 |
|--|

*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연합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4) 2024. 7. 기준

[표]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참고: 해양수산부 제공)

구분		지정 현황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17개소)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웅진장 봉도갯벌, 부안줄포만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신안갯 벌, 마산만 봉암갯벌, 시흥갯벌, 대부도갯벌, 화성 매항 리갯벌, 고흥갯벌, 사천 광포만갯벌, 제주 오조리갯벌, 여수갯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신두리사구, 문섬 등, 오류도, 대이작도, 가거도, 소화도, 나무섬, 남형제섬, 청산도, 울릉도, 추자도, 토끼섬, 조도, 통영선촌마을, 포항 호미곶, 울진 나곡리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가로림만, 고성하이면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보령소항사구
시·도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1개소)	송도갯벌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1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37개소, 1,904.432km²), 2024. 7. 기준

지정명칭	지정일	면적(km ²)	위 치	비고
습지보호지역 (18개소)	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1,539.74km²)			
무안갯벌	'01.12.28	42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목포청 (’08.1 람사등록)
진도갯벌	'02.12.28	1.44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대	목포청
순천만갯벌	'03.12.31	28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여수청 (’06.1 람사등록)
보성별교갯벌	'18.09.03 '20.12.31	31.85 2.07	보성군 별교읍 일원(확대지정) 보성군 별교읍 장양리·영등리·장좌리	여수청 (’06.1 람사등록)
웅진장봉도갯벌	'03.12.31	68.4	웅진군 장봉리 일대 갯벌	인천청
부안줄포만갯벌	'06.12.05	4.9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일원	군산청 (’10.2 람사등록)
고창갯벌	'18.09.03	64.66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및 해리면 일원(확대 지정)	군산청 (’10.2 람사등록)
서천갯벌	'18.09.03	68.09	서천군 서면, 비인면, 마서면, 중천면 및 장항읍 일원(확대지정)	대산청 (’09.12 람사등록)
송도갯벌*	'09.12.31	6.11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인천 연수구청 (’14.7 람사등록)
신안갯벌	'18.09.03	1,100.86	전남 신안군 일원(확대지정)	목포청 (’19.2.28 람사등록)
마산만 봉암갯벌	'11.12.16	0.1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일대	마산청
시흥갯벌	'12.02.17	0.71	시흥시 장곡동 일대	인천청
대부도갯벌	'17.03.22	4.53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평택청 (’18.10 람사등록)
화성 매항리갯벌	'21.07.20	14.0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주변 갯벌	평택청
고흥갯벌	'22.12.29	59.43	전라남도 고흥군 여자만 주변지역 갯벌	여수청
사천 광포만갯벌	'23.10.23	3.46	경상남도 사천시 광포만 주변지역 갯벌	마산청
제주 오조리갯벌	'23.12.21	0.24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주변지역 갯벌	부산청
여수갯벌	'24.07.30	38.81	전라남도 여수시 여자만 주변지역	여수청
해양생태계 보호구역(16개소)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65.322km²)			
신두리사구	'02.10.09	0.64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대산청
문섬 등	'02.11.05	13.684	서귀포시 강정동-보목동 일원해역	부산청
오륙도	'03.12.31	0.35	부산시 남구 용호동	부산청
대이작도	'03.12.31	55.7	웅진군 이작리·승봉리 일원	인천청
가거도	'12.11.30	70.17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일원	목포청
소화도	'12.11.30	0.81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일원	목포청
나무섬	'13.11.29	0.275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	부산청

남형제섬	'13.11.29	0.1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	부산청
청산도	'13.11.29	71.38	완도군 청산면 일원	목포청
울릉도	'14.12.29	39.44	울릉군 울릉읍 북면·서면 주변해역	포항청
추자도	'15.12.29	1.18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예초리 일원	부산청
토끼섬	'16.12.29	0.593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원	부산청
조도	'17.12.08.	5.01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일원	동해청
통영선촌마을	'20.2.14.	1.94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일원	마산청
포항 호미곶	'21.12.31.	0.25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인근 연안해역	포항청
울진 나곡리	'22.11.24.	3.8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포항청
해양생물 보호구역(2개소)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94.14km²)			
가로림만	'16.07.28	92.04	서산시 및 태안군 가로림만 해역	대산청
고성하이면	'19.12.31.	2.1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주변해역	마산청
해양경관 보호구역(1개소)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5.23km²)			
보령소항사구	'18.12.01	5.23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및 독산리 일원	대산청

* 송도갯벌은 시·도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함